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3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이훈기・유동수・김정호

박희승・황 희・서영교

노종면 • 양문석 • 문금주

최민희 · 김교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기차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 제5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2(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
	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
	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
	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u>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u>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
	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
	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
	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
	<u>업자</u>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②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2. (생략)

③ (생략)

<u>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u> <u> 자</u>

-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 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 2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4. ~ 1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